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4. 주요내용

- 복무선서의 시기와 장소를 추가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별 표에 규정하도록 함 (안 제2조)
- 비밀엄수 의무자에 “공무원 이었던 사람”을, 보호 이익에 “지방자치단체·국민”을 추가하고 각 호의 문구 일부 수정 (안 제4조)
-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당직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충돌조항 삭제
 -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삭제·개정
 - 제6조제2항, 제7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5조제1항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문 변경에 따라 시행령 인용조문을 개정 (안 제14조제7항)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당직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현재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만 있음.
 -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충돌하여 삭제하였는데 제5조는 근무기강 확립, 제13조제1항은 복장, 제15조제2항은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연가를 분할하여 허가하는 규정, 제18조제2항은 ‘여성 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삭제한 것임.
 - 제6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아 삭제를 하는 것이고
 -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근검·절약 의무, 제20조의 ‘공무원이 공무목적 외에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임.
 -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연가계획을 제출할 경우 계절별로 분할하고

기일 등 가정 경조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자유로이 연가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임.

-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2019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는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임. 관련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을 보호하는 규정,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 부담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그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로 “상위법령(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인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